

#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윤 경  
(춘천지법 부장판사)

## I. 언론소송의 특성

### 1. 언론매체와 언론소송

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 등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론은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감시하는 헌법적 수단이며 공직자들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널리즘에서의 상업주의의 격화로 무책임한 가십이나 스캔들의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고, 독자들의 지속적인 취미에 영합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가 일반화되는 등 언론매체의 부정적 영향 또한 점차 증대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사인 등의 대응도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응징을 중시하는 형사 소송 절차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명예 훼손에 대한 구제라고 할 때에는 민사상 구제 수단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 2. 언론소송의 특성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피해자가 언론매체(및 그 종사원)를 상대로 민사상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통칭하여 언론소송이라 한다. .

통신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언론매체는 거대화, 광역화되어 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그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는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피해의 신속성·광범성·치명성).

표현의 자유는 자기의 사상을 제한 없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개인의 지고한 인격과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필연

적으로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희생당할 수 있는 인격권 등 개인적 권리의 보호, 그 양자 간의 조화점을 찾는 일이 언론소송의 핵심이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88. 10. 11. 85다카29 판결).

### 3.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 등 원상회복청구,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침해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등이 있다.

언론소송에서의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는 것, 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은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는 것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본안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인용 주문은 보통 금원지급 부분(위자료, 재산상 손해)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 그리고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 II. 언론소송의 요건사실

### 1. 보호법익

#### 가. 명예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를 포괄하는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명예는 '인격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이다.